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합56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강형주

피고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담당변호사 장인태

변론 종결 2021. 10. 6.

판결 선고 2022. 1.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2. 22. 접수 제99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H(1995. 9. 19. 사망)과 망 I(2020. 1. 15. 사망)의 딸들이고, 피고는 위 망인들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1995. 9. 19. 망 H이 사망한 뒤, 1996. 2. 22. 망 H 소유의 양주시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K 전 4,189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협의분할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계약서 하단에는 원고들, 피고 및 망 I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협의분할계약서

서기 1995년 9월 19.일 양주군 L에서 H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I, A, B, C, D, E, G, F은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분할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양주군 M 답 3,653m²
2. N 답 1,415m²
3. O 답 3,309m²
4. P 답 149m²
5. Q 답 69m²
6. R 답 3,144m²

7. S 답 1,236m²

8. T 전 318m²

=== 위 부동산은 I의 단독 소유로 한다.===

10. U1) 전 4,138m²

=== 위 부동산은 G의 단독 소유로 한다.===

11. 금 1,800,000원 중에서 금 300,000원씩을 A, B, C, D, E, F의 각 소유로 한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K 전 4,189㎡	K 전 900m ²	K 대2) 지목변경일은 2001. 6. 8. 900m ² V 전 1,323㎡	K 대 900m ² V 창고용지3) 지목변경일은 2002. 8. 7. 1,323m ²	별지 목록 제1항 별지 목록 제2항
V 전 2,931m ²	W 전 1,608m ²	W 전 1,608m ²	별지 목록 제3항	
X 전 358㎡	X 전 358㎡	X 전 101㎡	2011. 7. 23. Z에게 소유권이전 별지 목록 제4항	
		Y 전 25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H의 사망 후 원고들, 피고 및 망 I은 1996. 초경 망 H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망 I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망 I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2020. 1. 15. 망 I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에게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라 적법, 유효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선

판사김덕수

판사황은정

별지

1) '양주군 J리'의 오기로 보인다.

2) 지목변경일은 2001. 6. 8.

3) 지목변경일은 2002. 8. 7.